

# 사단법인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정관

## 제 1 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(Korean Society of Animal Breeding and Genetics : KSABG, 이하 "법인"이라 한다)”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법인은 동물 유전육종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학술정보와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동물유전육종학 및 동물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명달로 88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학회지, 학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발간 및 배부
- ② 학술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- ③ 국내외의 관련 분야의 학계, 산업계 그리고 국제간의 학술, 기술 및 정보교류
- ④ 연구, 기술 및 교육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
- ⑤ 정부 및 관련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참여 및 협력
- ⑥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5조(법인공여이익수혜자)** ①법인의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

②법인의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,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.

③법인의 제4조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**제6조(정치참여 금지)** ①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②누구든지 법인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 2 장 회원

**제7조(회원의 자격)**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

입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
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8조(회원의 종류)**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.

①정회원: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

②학생회원: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동물 유전·육종·유전체 관련 학문을 수학하는 학생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

③단체회원: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축산관련단체, 연구기관, 학교, 도서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

**제9조(회원의 권리)** ①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③회원은 법인의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①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
②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
③회비 납부

**제11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**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제10조 3항 회비 납부의 의무를 2년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
## 제 3 장 임원

**제12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**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①회장 1인

②수석부회장 1인

③부회장 3인 이내

④이사 12인 이내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)

- ⑤감사 2인 이내
- ⑥임원선출 등에 관하여는 임원선거규정에 의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선임)**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임원의 임기)**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-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15조(직무대행)** ①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수석부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이사회에서 이사 중 직무대행을 호선한다.

**제16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①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②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③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④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⑤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**제17조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②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③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**제18조(임원의 직무)**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- ②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- ④회장은 이사 중 1인을 전무이사로 임명하여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케 한다.
-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## 제 4 장 총회

**제19조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학생회원으로 구성된다.

**제20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**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-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2.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-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②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③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- ④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⑤사업계획의 승인
- ⑥그 밖에 중요사항

**제23조 (총회의 의사록)**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의결정족수)**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학생회원을 모두 포함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.

**제25조(의결제척사유)**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①입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## 제 5 장 이사회

**제26조(이사의회의 구성)**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**제27조(이사의회의 소집)**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8조(이사의회의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
①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②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③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
④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
⑤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
⑥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⑦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⑧그 밖에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29조(정족수)**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

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0조(서면결의 금지)** 이사회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## 제 6 장 분과위원회

**제31조(분과위원회 설치)** ①제4조의 사업과 이 회의 원활한 발전육성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분야별 분과위원회로 재무, 홍보, 산학협동, 학술, 기획, 회원관리, 포상, 국제협력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.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분과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32조(분과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기)**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 단,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 7 장 재산과 회계

**제33조(재산의 구분)**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.

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**제34조(재산의 관리)**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법인이 매매,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.

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.

**제35조(재원)**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회원의 회비

②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과 보조금

③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
④사업 수입금

⑤그 외의 수입금

**제36조(회계의 원칙)**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
③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법인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7조(세입세출예산)**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,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,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회계감사)**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,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9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)**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본 법인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①법인의 설립자

②법인의 임원

③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
④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**제40조(차입금)**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제 8 장 사무부서

**제41조(사무국)** ①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법인은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고용 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른 고용이 불가 할 경우 법인의 사무는 전무이사가 수행한다.

④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

⑤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9 장 보칙

**제42조(법인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43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**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**제44조(정관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5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**제46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47조(기부금)** ①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,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것을 이유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②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, 기부금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그 내용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